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2월 23일, 추미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1.12.)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6.1.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추미애의원)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 내란·외환·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 개정안은 군사경찰이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군방첩사령부가 담당해 온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및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군의 특수성, 「국군조직법」 등 군의 조직 및 부대 체계에 관한 규율을 함께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임.
- ☐ 다만, 개정안에 따라 군사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 모두 형법상 내란·외

환의 죄 등에 대하여 수사하게 되는 경우, 수사관할의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김용민위원)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 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범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7. 심사결과

원안의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 ----- ----- ----- ----- -----.
1. 제43조1호에 규정된 사람: <u>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u>	1. -----: <u>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u>
2. (생략)	2. (현행과 같음)